

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9년 12월 7일
- 회부일자 : 2009년 12월 9일

3. 제안이유

- 교원의 정보화 연수, 교육정보 자료의 개발과 활용 지원, 이러닝 지원 체제의 구축·운영, 행정 정보 전산화의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정보원을 설립하며,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의 교육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청주지역에 설치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가.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의 일부를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56-4번지에 둠(안 제23조제2항)
- 나. 본청 직속기관으로 "충청북도교육정보원"를 둠(제9절)
 - (1) 충청북도교육정보원을 신설함(안 제31조의1)
 - (2) 충청북도교육정보원에 원장을 두며,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함(안제31조의2)
 - (3) 충청북도교육정보원장의 사무를 분장함(안 제31조의3)

5.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

가.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의 일부기능을 청주지역에 이전·설치를 위한 단서조항 신설(안 제23조제2항)

- 도내에는 학생 외국어 교육을 위해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및 남부영어체험센터와 북부영어체험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, 청주시 인근에는 영어 학습체험 기관이 없어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의 일부기능을 구 청주교육청 건물로 이전·설치하기 위해 단서조항 신설하려는 것임.

나.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의 신설에 따라 관련 조항 신설(안 제31조1 ~ 제31조3)

- 종합적인 교육정보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「충청북도교육정보원」 신설에 따라 안 제31조의1에서 설치 목적과 위치, 안 제31조의2에서 교육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것과 원장의 임무를 규정하고, 안 제31조의3에서 원장 업무를 새로이 규정한 것임.

○ 본 조례안은 교육행정 정보 전산화의 진흥을 위한 “충청북도교육정보원” 설립과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의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그 일부를 청주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「교육기본법」 제23조(교육기관 설치)에 근거하여 신설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며 조에 가지번호를 붙이는 가지개정방식을 사용한 바, 조례 개정 형식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붙임 :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1부.